

# 취재요청

수신	각 언론사
발신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제목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청원 접수 -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서울시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 일시 : 2019년 10월 30일(수)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서울시청 앞
- 사회 : 권명숙(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상황실장 / 서울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 서울시 조례제정 청원 접수 준비 경과보고  
: 권정호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용산미군기지 제대로 반환받아야 한다  
: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
- 서울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용산기지 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 용산미군기지가 온전한 반환을 위해 용산주민들이 나설 것이다(향후 계획발표)  
: 김은희 용산미군기지 온전히 되찾기 주민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각 진보정당 위원장

- 주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 ○ 운동본부 대표 제안자

- 조현정 (예수살기 상임대표, 전 향린교회 상임대표)
- 이장희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상임대표)

### ○ 운동본부 제안자

- 권은비 작가
- 권정호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김영준 (녹색당 서울시당 운영위원장)
- 김은희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모임 대표)
- 이동영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 박진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오인환 (민중당 서울시당 위원장)
- 임승수 작가
- 장순향 (한국민족총합회 이사장)
- 최경은 (서울청년네트워크 대표)
-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 운동본부에 함께하는 단체

- 녹색당 서울시당 / 용산녹색당
- 녹색연합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민중당 서울시당
-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주민모임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정의당 서울시당
- 한국민족총합회
- 불교환경연대
- 대한불교청년회
- 종교환경연대회의
- 서울진보연대
- 서울청년네트워크

# 청 원 서

제목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 청 원 인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202호
- 성 명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이장희 (인) 외 180명

○ 소개의원 : 권수정의원

○ 조례제정 취지 및 조례안(별첨)

[기자회견문]

**용산미군기지 환경문제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서울시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2017년 4월 시민사회가 미국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0~2015년 용산미군기지내 유류 유출사고는 84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3700리터 이상의 기름 유출사고가 7건, 400리터 이상의 사고가 26건 등이며 3700리터 이상이면 주한미군 기준으로도 최악의 상황이며, 400리터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18년 12월 서울시가 용산미군기지 인근 지하수 관측용 우물(관측정) 62곳에 대해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27곳에서 정화기준을 초과한 지하수가 검출되었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은 녹사평역 주변 41곳 가운데 16곳의 지하수 관측정에서 지하수법에서 정한 정화기준(0.015 mg/L)의 최대 1170배(17.557mg/L)가 검출되는 등 용산미군기지 주변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정화기준의 1170배나 넘게 검출된 벤젠은 단기간 흡입시 현기증이나 두통을 유발하고 장기간 흡입시에는 백혈병과 혈액암을 유발하고, 생식 기능에도 악영향을 끼쳐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유해물질이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어야 한다. 미군기지 내부에서 어떠한 오염사고가 있었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주한미군에게 미군기지를 빌려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알권리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오염사고에 대한 그 어떠한 연락체계나 오염사고 발생시 후속조치에 대해 아무 것도 알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는 서울시부터 나서서 심각한 미군기지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한미군기지 5곳(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에 65년 이상 주둔하였던 주한미군이 평택 캠프 험프리로 이전함에 따라 각종 환경 및 안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환경사고 등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물론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 수립, 정보의 공유, 현장 조사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각종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오염정화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 자연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지난 2016년, 2017년 경기도, 평택시, 부산남구는 미군기지 환경사고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다. 그동안 방치되어온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서 한미SOFA 환경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당연히 서울시 한복판에 미군기지가 있는 서울시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이다.

또한 한미 당국간 반환협상이 마무리되면 용산 미군기지는 용산국가공원으로 서울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바, 군사기지에서 평화·생태공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과 폐기물 등 부지의 환경오염을 치유하고 녹지공간으로 복원하는 방안에 관하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참여를 통해 평화·생태공원 조성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조례가 필요하다.

용산미군기지 환경문제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서울시는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용산미군기지 오염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0월 30일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 청 원 서

제목 :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 ◎ 용산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의 심각성

- 2017년 4월 시민사회가 미국 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0~2015년 용산미군기지내 유류 유출사고는 84건에 달함.  
이중에는 3700리터 이상의 기름 유출사고가 7건, 400리터 이상의 사고가 26건 등이며 3700리터 이상이면 주한미군 기준으로 최악, 400리터면 심각한 수준임
- 2018년 12월 서울시가 용산미군기지 인근 지하수 관측용 우물(관측정) 62곳에 대해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27곳에서 정화기준을 초과한 지하수가 검출됨.
-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은 녹사평역 주변 41곳 가운데 16곳의 지하수 관측정에서 지하수법에서 정한 정화기준(0.015mg/L)의 최대 1170배 (17.557mg/L)가 검출.
- 벤젠은 단기간 흡입시 현기증이나 두통을 유발하고 장기간 흡입시는 백혈병과 혈액암을 유발하고, 생식 기능에도 악영향을 끼쳐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유해물질임.
- 캠프킴 주변 지하수 관측정 21곳 중 11곳에서는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 측정치가 지하수법에서 정한 정화기준(1.5mg/L)의 최대 292배(439.2mg/L)가 검출.
- 석유계 총 탄화수소란 기름으로 오염된 시료 가운데 등유, 경유, 제트유, 벙커시(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말함. 관측을 시작한 2008년 같은 장소에선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기준치의 6578배(9867.4mg/L)가 검출.

## ◎ 조례제정 이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주한미군기지 5곳(메인포스트, 사우스포스트,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에 65년 이상 주둔하였던 주한미군이 평택 캠프 험프리로 이전함에 따라 각종 환경 및 안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환경사고 등으로부터 서울시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물론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 수립, 정보의 공유, 현장 조사 등의 절차가 필요함.
- 따라서 미군기지 및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시설 및 구역, 인접 지역에 대해 서울시와 주한미군 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환경 관련 정보 공유 및 절차 등을 정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환경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각종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오염정화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임.
- 한미 당국간 반환협상이 마무리되면 용산 미군기지는 ‘용산공원’이란 이름으로 서울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바, 군사기지에서 평화·생태공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각종 유해물질과 폐기물 등 부지의 환경오염을 치유하고 녹지공간으로 복원하는 방안에 관하여,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참여를 통해 평화·생태공원 조성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청원함.

## ◎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용산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후속 조치를 취하여 서울시민의 생명·안전·재산 및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주한미군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평화·생태공원으로의 용산공원의 조성방안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이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경기도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2.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
3. “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공여구역이 소재한 행정동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행정동에 연접한 지역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4. ‘환경사고’란 주한미군기지를 비롯한 공여구역 및 공여구역주변지역(이하 ‘주한미군기지 등’ 이라 함)에서 공공안전, 주민의 건강, 재산, 자연환경에 대해 실질적인 위험을 가하는 사고(주한미군 시설 경계의 일방에서만 발생하는 경우라도 중대한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사고 포함)를 말한다.
5. ‘주한미군 환경경관리기준’이란 한미 양측이 2001년 서명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서 합의한 것으로서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환경관리기준(Environmental Governing Standards, 주한미군은 환경부와 협력하여 이를 검토 갱신하며 이때 미국의 관련 환경기준·정책과 대한민국의 법령 중 보다 보호적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을 말한다.
6. ‘환경안전시설’이란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에 소재하는 각종 유류탱크 등 저장시설, 송유관, 각종 실험실 등 환경오염·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과 주요 장비를 말한다.
7. ‘실무그룹’이란 SOFA 절차에 따라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한미공동조사에 대한 합의를 통해 오염조사 범위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SOFA 환경분과위원회와 해당 미군부대, 지자체 관계자로 구성된 그룹(EJWG)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에 위치한 용산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사고 및 용산 평화·생태공원의 조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주한미군 관련 조약, SOFA 규정 및 국내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4조(미군 주둔 목적, 발동요건 및 적용지역)

1. SOFA 협정 합의의사록 환경조항(2001),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2001),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2002),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A -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 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2002), 공동환경평가절차서(2009)

1. 환경정책기본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시장의 책무)**

-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 라 한다)은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생존권, 환경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주민의 건강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주한미군과 상호 교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구청장이 주한미군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 관련 정보의 공유, 환경오염·사고의 예방 및 사고 발생에 따른 통보, 조사, 치유 조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제4조 등의 환경 관련 SOFA 규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용산공원의 관리주체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참여를 통해 평화·생태공원 조성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도록 지휘하여야 한다.

### **제6조(환경정보의 공유)**

- ① 시장은 지역 환경관리를 위해 주한미군측이 보유한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SOFA 환경분과위원회를 통해 정보 제공을 적극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환경정보는 주한미군기지 등의 환경안전시설 현황을 비롯해 정기점검실적, 환경이행실적, 환경적 악영향 최소화 계획 프로그램, 각종 생화학 실험노트 등을 포함한다.

**제7조(환경관리기준)** 시장은 주한미군의 환경관리기준(EGS)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한미 양측의 환경관리기준 검토 및 갱신 시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확보한 관련 정보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비상 연락체계 구축)** 시장은 구청장이 관할 주한미군과 환경사고의 예방 및 신속한 치유를 위하여 상호비상 연락체계(Point of contact)를 수립해 유지하고 필요시 갱신하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 제9조(환경사고 통보 절차)

- ① 시장은 주한미군과 환경사고 발생 시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1. 지체 없이 상호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환경사고의 내용을 우선으로 신속히 통보할 것
  2. 사고발생 48시간 이내에는 서면 통보할 것
  3. 환경사고 사실을 환경부에 보고하여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보고되도록 할 것
- ② 구청장이 주한미군과 상호 통보하여야 하는 환경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발생한 환경사고가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주한미군기지 등 밖에서 주한미군이 원인이 된 환경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서울시에서 발생하여 주한미군기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사고
  4. 주한미군기지 등 경계주변에 걸쳐 발생한 환경사고
  5.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발생한 환경사고로서 주한미군기지 등 밖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그 사고 규모, 오염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주한미군기지 등 밖에서 발생한 환경사고로서 인접 주한미군기지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지만 그 사고 규모, 오염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 및 보고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환경사고 발생 시 세부적인 통보 및 보고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현장조사 및 방제활동)

- ① 시장은 환경사고 발생 시 서울시 공무원이 주한미군기지 등에 출입하여 사고현장에 접근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환경사고가 발생하는 즉시 각 관할지역에서 적절한 1차 방제활동을 실시하도록 하며 오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대한 공동 조사, 공동 방제 작업을 요청해야 한다.

### 제11조(공동조사 대상 및 절차 등)

- ① 시장이 제10조에 따른 현장 접근 및 공동조사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원인은 분명하나 그 피해범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주한미군기지의 반환과 공여에 따라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② 시장은 현장 확인을 위한 오염지역 출입과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조사 목적, 범위, 방법과 일정, 출입자 명단 등을 명확히 하여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한국 측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공동조사 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합동실무조사단 추천 등)**

- ① 시장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실무그룹 또는 합동실무조사단을 구성할 경우 조사단에 참여할 공무원, 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하고 한국 측 실무조사단장을 별도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이 추천한 한국측 합동실무조사단장은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고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SOFA 환경분과위원회와 서울시에 보고하고 적절한 대응을 권고해야 한다.

**제13조(합동실무조사단 후속조치)** 합동실무조사단에 참여한 서울시 공무원은 조사단의 공동조사를 통해 오염지역에 필요한 치유 및 복원조치와 재발방지 등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해 회복 지원)** 시장은 주한미군기지 등에서 환경사고 피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생명, 안전, 재산, 자연환경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용산공원의 조성 촉진)** 시장은 용산공원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에서 상업개발을 지양하고 평화·생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 2. 한미 당국간 재협상을 통해 본체부지의 전면 공원화를 요구
- 3. 평화·생태공원을 디자인하는 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